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30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허 영·송재봉·박지원

서영교 • 박상혁 • 권칠승

박성준 · 임호선 · 소병훈

안도걸 • 이연희 • 홍기원

김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의 경우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의 경우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1990년 이후 2022년까지 의 주변지역 피해 추정액(최대 10조원)의 약 2% 수준인 1,120억원이 지원된 데 불과하여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댐사용권자는 댐 건설 시 부담한 건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댐 저수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 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다목적댐의 경우 이미 건설투자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어, 그 초과수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 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 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 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 지역에 환원하고자 함.

이에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는 법률로 하되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2호)의 의결을 전 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